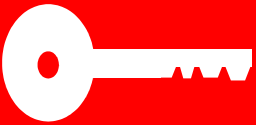


핵심설명서 	<p>이 설명서는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p> <p>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p>
--	---

해외여행보험 상품설명서

<가입시 유의사항>

1. 해외여행보험은 상해사망·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하여 계약자가 필요한 담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질병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질병이력과 관련된 담보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하였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에 가입할 실익이 낮습니다.

《보험상품 분류 및 가입상품의 종류》

보험상품 분류		가입상품종류	비고
보장성보험	화재		
	해상		
	기술		
	근재		
	책임		
	상해	○	만기환급금 없음
	종합		
	기타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주) 한국지점

가.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 :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주) 한국지점
- 모 집 자 : 영업1팀, 도요츠츠우쇼대리점, 김김김 (연락처 02-123-4567)
- 기본계약 보험기간 : 2011. 1. 1. 부터 2012. 1. 2. 까지
- 보험상품명 : 해외여행보험
- 보험계약관계자
 - 보험계약자 : 미쓰이재 보험(주) 한국지점
 - 피보험자 : 상동 (남/여, 세)
 - 보험수익자(사망시): asdfasd
- 보험료: 987.654.321 원 (납입방법: 1년예치/만료후 정산)
- 보험계약 주요 체결내용

※ 상세 사항은 요율견적서(Rate Quotation), 청약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보장명	보장내용(지급 사유)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기본 계약	상해사망 / 후유장해	여행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 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영구히 상실한 때	100원	99
선택 계약	질병사망	여행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영구히 기능이 상실되어 80%이상 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500	55
	배상책임손해	여행중에 생긴 우연한 사 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 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 배상책임	900	11
	휴대품손해	여행중에 피보험자가 소 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 에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단, 통화,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제외)	1000	0
	항공기납치	여행중에 피보험자가 승객 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90000	1000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기본계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

[보험계약자의 권리]

①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1)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시거나, 2)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당사 한국지점(☎ 02-3702-5800)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수하동 미래에셋 센터원 서관 18층) (100-210)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주) 한국지점 (전화:3702-5800)

②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의무]

①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 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을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는 사례 예시]

- 회사원 A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 발생
 - B씨는 보험가입 당시 사무직으로 직업을 고지하였으나, 이 후 농업종사자로 직업을 변경 한 후 농기계 운전 중 사고 발생
 - 무직자였던 C씨는 상해보험 가입 몇개월 후부터 생계를 위하여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중에 교통사고 발생
 - 고등학생인 자녀D에 대해 상해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이 후 체육 특기생으로 변경 된 후 상해사고 발생
- ※ 상기 예시는 직업·직무급수 변경 여부, 가입 담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권리]

①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한(서명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① 계약의 해지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계약의 무효사항

보험계약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관련 사항 등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③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 혈족

* 배우자는 위의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④ 상품별 특이사항

□ 부부형(가족형 포함)보험

- 부부형(가족형 포함) 보험계약 가입 후 보험기간 중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종피보험자(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이혼 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라.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입원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에 관한 사항]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물보험 등의 일부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재물손해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비례보상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다수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배상책임보험 등 실제 손해액에 기초하여 보상하는 보장의 경우,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계약체결 이전에 확장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 책임보험에서는 사고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적용되어 손해액이 차감될 수 있으며, 과실은 같거나 비슷한 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선례가 없는 경우는 법률자문을 통해 과실을 산정합니다.
- 책임보험이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반드시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보상도 되지 않습니다.

[인보험에 관한 사항]

- 후유장해의 경우 치료받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을 경우 심사기간이 길어질수 있으므로 주치료병원이나 수술받은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간혹 의사가 진단을 부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최종 진단을 확정합니다.
- 한방병원에서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증진을 위한 침약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면책에 관한 사항]**(1) 사망/ 후유장해**

-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2) 배상책임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아니합니다.
 1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 조 규정 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아니합니다.

18.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19.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20.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3) 휴대품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재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5.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6.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마.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①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당사 한국지점(02-3702-58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s-ins.co.kr) 또는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02-3702-8500)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바. 기타 유의사항

① 보험모집자의 업무범위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입니다.

- ▶ 보험회사는 서면, 녹취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과거 병력 등 계약전 알릴사항을 수령합니다.
- ▶ 보험회사는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보험료를 납입받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모집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의 전환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③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④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형법상 금지된

⑥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사항

1.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금 대리청구인은 왜 지정해야 하나요?

보험계약은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발생시 인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 치매보험 가입 후 치매가 발생한 경우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치매보험금 청구가 곤란

☞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여 두시면 대리청구인이 가입자(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방법

가입하신 계약 중 본인을 위한 계약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리청구인 지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청구인 신청 연락처 : 3702 - 5847

⑦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금강원 통합콜센터 1332)에서 조회를 원하는 상속인 등에게 금융계좌 보유 유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사망사실(사망일자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상속인 신분증
- ※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법원으로부터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선고받은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 증명서 (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메 모

8.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번호	주요 설명 내용
1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자에 대한 정보(소속, 지위)에 관한 사항 및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계약의 개요(특약별납입기간에 대한 주의설명 포함)
2	청약철회, 계약취소, 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등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및 보장내역 (갱신평약의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주의 설명 포함)
4	보험금 지급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5	계약의 해지 및 무효, 적용이율, 해지환급금, 중도인출, 갱신평 특약, 유배당보험계약, 상품별 특이사항 등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6	예금자보호,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 등 보험계약자보호에 관한 사항
7	보험모집자의 업무범위(보험료·고지의무 수령 가능 여부), 보험계약전환, 소멸시효, 계약변경,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유의사항
8	갱신평특약(실손의료비특약 제외)에 가입하신 경우 갱신평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갱신평주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설명
9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사망 보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보험금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확인 >

- ◆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 내용’을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 상품설명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 보험모집자 **여여여**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칼칼칼** 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1234	12 월	12 일	보험모집자	종종종	(인)
------	------	------	-------	-----	-----

[보험계약자 확인]

- 보험모집자 **여여여** (으)로부터 상품설명서 , 요율견적서(RQ)에 대한 내용을 교부받고 **설명 듣고 이해**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4321	11 월	1 일	보험계약자	철철철	(인)
------	------	-----	-------	-----	-----

